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2431 재물손괴[변경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재물손괴)]

피 고 인 1. 김태선
주거 서울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광주시 이하 생략
2. 박근식
주거 서울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시 이하 생략

항 소 인 검사

검 사 어○○(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 담당변호사 황○○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0. 선고 2020고정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들이 오○○○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조합 소유 재물을 위법하게 손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용접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오○○○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18. 10. 12. 무단 침입한 상황에서 양○건설 입장에서 향후에도 재차 침입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치권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오○○○주택조합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4357)에서의 판단과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까지 포함하여 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¹⁾.

1) 원심이 죄명에 변경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파기사유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제4회 공판조서) 그 취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자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존에 주장한 위법성 조각 주장(제1회 공판)은 계속 유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재판장 판사 엄○○ _____

 판사 박○○ _____

 판사 박○○ _____